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77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박충권

우재준 • 배준영 • 최수진

박준태 · 김은혜 · 유용원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수단에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함 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제3호아목 신설 등).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아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해운법」"을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으로 한다.

-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 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 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 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
- 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 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강장

제6조제2항제5호 중 "버스의"를 "버스 또는 택시의"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버스를"을 "버스 및 택시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송사업자에게"를 "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로 한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 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 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
-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 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제14조의3 중 "버스에"를 "버스 및 택시에"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을 "택시를"로 한 다.

제16조의3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버스의"를 "버스 또는 택시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	2
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업에 사용되는 도선
<u><신 설></u>	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이하 "택시"
	<u>라 한다)</u>
<u>사.</u> (생 략)	<u>자.</u> (현행 사목과 같음)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	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	
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	
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신 설></u>	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신 설>

아. (생 략)

- 4. (생략)
-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장아시설법」, 「장아시설법」, 「하안법」, 「해안법」 등의 관계 법령에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 8. (생략)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 제 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2소제3호에 따른 노선상
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승강장
차. (현행 아목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해운법」, 「유선 및 도선
<u>사업법」</u>
,
6. ~ 8. (현행과 같음)
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
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
Ó \
<u> </u>
当) ②

포함되어야 한다.

- 1. ~ 4. (생략)
-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u>버스의</u> 도 입에 관한 사항
- 6. ~ 9. (생략)
- ③ ~ ⑤ (생 략)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 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 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 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 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u><신</u>설>

					•					
	1.	~	4. ((현형	뱅과	같	음)			
	5.									
	_						버 :	스	또	는
	Ę	택시	의-						-	
	6.	~	9. ((현형	뱅과	같	음)			
	3	~	5	(현	행고	나 같	음))		
제	14	조의	12(전세	버스	의	0]	용	보	장
	등)	(1) [구음	각	호:	의	어그	=_	하
	나	케	해딩	}하	는 >	사는				
							<u>ㅂ</u>]스		및
	<u>택</u>	시를	<u>-</u>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 치할 경우 전세버스 <u>운송사업</u> <u>자에게</u>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 저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 의2에 따라 <u>버스에</u>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

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
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
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
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
업자"라 한다)

2	•	- 택	시운	송사업	의	발전	에	관
	<u>한</u>	법	률」	제2조	:제]	1호에	u	}른
	택,	시윤	-송/	사업을	경	영하는	=	자
	(0)	하	0]	조에서	"	택시운	_송	 :사
	업:	자"	라	한다)				

운송사	·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세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
착 등)	
<u>버스 및 택시</u> c	<u>케</u>

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①
수 ·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	
거나 교통약자가 <u>「택시운송사</u>	<u>택시를</u>
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	
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	
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생 략)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	②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 ③ ④ (생 략)
-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u>버스의</u> 표준모델개발
 - 3. ~ 6. (생략)
 - ②·③ (생 략)

	<u>3.</u>		택	시	(<u>'</u>	1통	약	자.	가_	틴	승さ	하지
		아	니.	한	た] 우	는	저	외	한1	<u> </u>	
	3	•	4	(현	행.	과	같	음))		
저	126	5조	<u>:(</u>	47	ı.	가	발	의	李	-진	등)	1
	1.	(현 ⁸	행 3	라	같	음)				
	2.	_										
							<u>버</u>	스	또	는	택기	<u> 시의</u>
								_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